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8.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관내 사업장의 위험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목적과 관련 용어를 규정.
  - 안 제3조와 제4조는 동 조례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 규정.
  - 안 제6조는 협력체계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구체화하여 규정.
  - 안 제9조는 영등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방법 규정.
  - 안 제10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통한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개정된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영등포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를 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통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이 점차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홍보 및 교육 등으로 안전 문화 의식 내재화와 경각심 제고가 어우러진 성과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이순우, 유승용, 이성수  
전승관 의원(4인)

##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협력체계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8. 19. ~ 8. 23.)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등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